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소관 부처 변경 등>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98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나아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2. 7.
3. 회부연월일 : 2024. 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구호의 종류로 심리회복 지원을 두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시·도에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있으며, 그 밑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체계와 대한적십자사가 주로 활동하는 재난회복지원센터 중심의 행정안전부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러나, 심리회복지원업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각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성이 보다 있으며,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에 중앙심리회복지원단을 두고 중앙심리회복지원단은 효과적인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소관 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② 중앙심리지원단장이 효과적인 심리회복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 대응에 참여한 공무원 또는 재난피해자 등의 심리회복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u>행정안전부에</u>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시·도에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각각 둘 수 있다.	제8조의2(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① ----- ----- ----- ----- ----- ----- ----- <u>보건복지부에</u>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심리지원단은 관계부처	③ -----

현행	개정안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u>행정안전부 장관이</u> 지명한다. <신설> ④ · ⑤ (생략) <신설> ⑥ (생략)	-----보 건복지부장관이-----. ④ 중앙심리지원단장은 효과적인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의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 등을 포함한 통합심리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⑦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충분한 심리회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구조·복구·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 2. 보건복지부장관: 재난피해자 및 그 유가족(희생자 유가족을 포함한다)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현행법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¹⁾ 또는 구호지원기관²⁾이 이재민³⁾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함)을 시·도에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도심리지원단”이라 함)을 각각 둘 수 있도록 규정⁴⁾하고 있음.

중앙심리지원단은 재난 시 심리회복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 간 중복 및 혼란을 방지하고, 통합적 심리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 1)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구호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2)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구호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 나.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 다. 그 밖에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3)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4) 「재해구호법」 제8조의2(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시·도에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각각 둘 수 있다.
 - 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관련기관 간 업무 연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중앙심리지원단은 관계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 ④ 시·도심리지원단은 심리회복지원 관련 중앙 및 지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보건·의료기관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⑤ 시·도심리지원단은 시·도 관계부처 공무원, 지역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 ⑥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단 및 시·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재난으로 인한 심리회복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① 중앙심리지원단이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② 재난 발생 초기의 심리적 충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이재민, 일시대피자⁵⁾ 및 재난경험자⁶⁾ 등에 대한 심리지원 활동을 통해 그들이 재난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③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국가트라우마센터⁷⁾와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연계·관리를 통해 심층 심리상담, 의학적 치료지원 등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5)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6) **재난경험자**: 구호·봉사·복구 활동 참여자, 재난목격자, 재난 피해 정도에 관계없이 당사자 신청 또는 재난심리 유관기관에서 심리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29., 2024. 1. 2.>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보급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의 구축

5.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6.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8.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④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 1. 2.>

1.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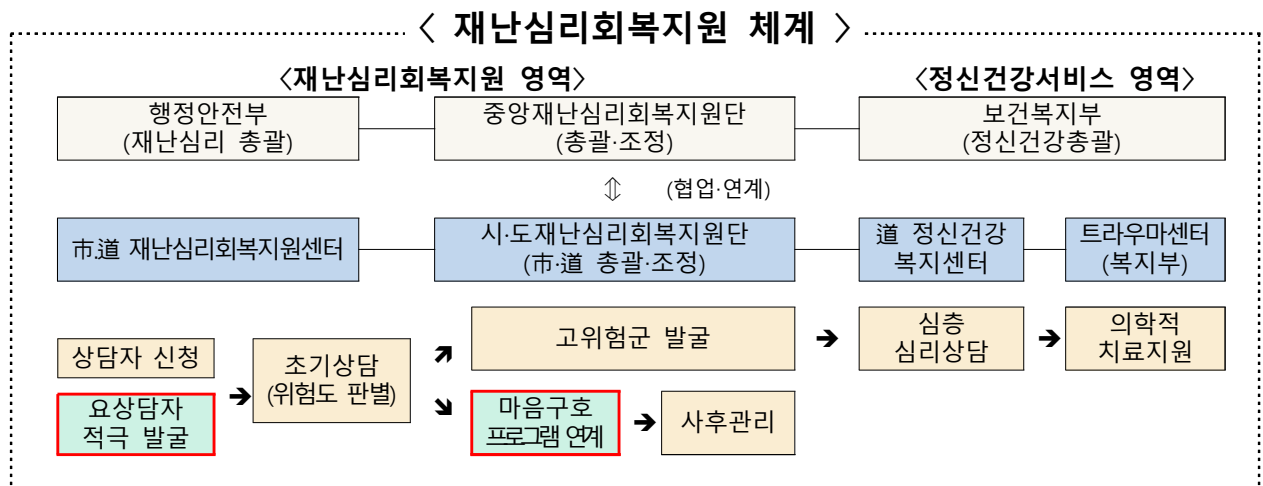
2.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해당 권역의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정신건강에 대하여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고, 실제 재난으로 인한 장기적인 심리치료와 관련하여서도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총괄·조정 기능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중앙심리지원단을 행정안전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하고, ② 효과적인 심리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 등을 포함한 통합심리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구조·복구·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피해자 및 그 유가족(희생자 유가족

포함)’에 대하여 각각 충분한 심리회복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수립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난심리회복과 관련한 전문성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첫째, 중앙심리지원단의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법체계 및 재난·안전 관련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재난에 관한 현행 법체계는 점차 대형화·복잡화 되고 있는 재난의 특성과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소통 필요성을 고려하여 재난과 관련한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행정안전부에 부여하고 있음.

먼저, 「정부조직법」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규정⁸⁾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정안전부에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음⁹⁾.

8)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또한, 같은 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¹⁰⁾하고, 동 시행령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규정¹¹⁾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중앙심리지원단을 행정안전부에 두어 재난심리회복지원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재난의 대비, 대응 및 피해회복 등 재난과 관련한 모든 업무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가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에 관한 총괄·조정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 활동의 세부 지원방안
 2.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3. 심리회복 전문가 인력 확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5. 상담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연구 및 홍보
 6.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2.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

관한 사항만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통일성 있는 재난 대응에 혼란을 야기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미국은 재난 발생 초기단계에서는 연방재난관리청(FEMA) 내의 심리지원조직이 초동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신보건센터가 정신 건강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으며, 일본은 재난 발생 72시간 내에는 재난 지역의 조정본부가 지정한 재해과견정신의료팀(DAPT) 선발대가 활동하고 장기적으로는 마음케어센터에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둘째,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의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현행법이 “심리회복”을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으로 정의¹²⁾하고 있고, 재난 초기의 심리적 응급처치를 통한 재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문 치료기관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재난 초기부터 전문 치료목적의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반면, 보건복지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의 통합심리지원단을 구

12) 「재해구호법」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성·운영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한다는 입장임.

셋째, 행정안전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심리회복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재난심리회복지원 체계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재난심리회복지원 체계상 재난 발생 초기의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대응하고 있고, 장기적인 정신건강 치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또한,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에 ‘재난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¹³⁾되어 있음.

1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재난 심리지원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시설·단체 등은 자료의 제공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중장기적 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재난 발생 초기의 심리회복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재해구호법」이 아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349

⑤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개요

- (근거) 재해구호법 제8조의2,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3
- (목적) 재난 시 효과적 심리회복지원을 위해 관련기관 업무 총괄·조정
 - ※ 심리지원 관계기관 간 중복 및 혼란을 방지하고 통합적 심리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운영

□ 중앙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 (구성) 26명 (단장은 민간위원)
 - (당연직)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12명
 - *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여가부, 고용부, 경찰청, 산림청, 소방청, 해경청, 인혁처
 - (위촉직) 심리회복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민간 전문가 14명
 - (임 기) 2년(제3기, '24.7.~'26.7.)으로 연임 가능
- (회의) 정기 : 연2회(상·하반기), 수시 : 재난 발생시
 - ※ ('20년) 8.14. ('21년) 6.30. ('22년) 3.28., 11.3., 11.19., 12.15. ('23년) 5.9., 7.21., 12.15. ('24년) 4.22., 6.17., 6.24., 12.17., 12.29

□ 주요 활동 내용

- 다수 부처 공동 활용을 위한 상담 척도지 마련('20.)
- 이태원 사고 발생 이후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가동('22.11.3.~12.15.)
 - 부처별 심리지원 역할 분담, 심리상담 핫라인 증설·대국민홍보
- 이태원 사고 경험 대학생 심리지원 방안 마련('22.11.19.)
- 호우 피해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23.7.21.), 경기 화성 공장 화재 관련 회의 개최('24.6.24.)
- '23년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정례 회의 개최('23.5.9./12.15.)
 - 부처별 재난심리회복지원 현황 공유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 개최(4회)